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정 : 1998. 9. 30.

7차 개정 : 2021. 1. 11.

제1조(적용범위) 「사립학교법」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와 학교법인 배달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제70조(운영세칙)에 의거 한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
- 2. 경징계 : 감봉, 견책
- ② 파면과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즉시 상실한다.
-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11.2.)
-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장계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사립학교법」및 기타 교육관계법령, 「정관」및 학교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부정청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대만히 한 때
-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희롱·성폭력, 기타 행위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4. 기타 대학의 명예나 품위 혹은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5. 각종 판례에서 징계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정관」 제6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한다.

- ② 제1항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사례와 같이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한다.
- 1. 교비횡령의 경우 : 횡령행위가 있는 날
- 2. 허위학위로 임용 : 재직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징계처분 시점
- 3. 논문표절 : 표절논문을 학술세미나 등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게재한 시점
- ③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된다. 다만, 이 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한다.

제5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정관」제68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에 의한다.

- 제6조(총장의 징계제청) ①교원이 본 규정 제3조(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이 그 징계사 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제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제청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징계제청서<별지서식 제1호>
 - 2. 본 규정 제7조(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 제7조(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 ① 징계제청을 받은 이사장은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 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 2. 징계의 종류와 양
 -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
 -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 6. 근무성적표
 - ② 징계의결요구서는 언제, 어떻게, 어떠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의결요구자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하고, 징계부가금 요구 사건인 경우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11.)
 - ④ 중징계가 예상되는 징계의결요구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
 - ⑤ 징계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인 경우 및 횡령,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정관」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에 의하여, 이사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 상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위원회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정관」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정관」제60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및 「정관」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에 의한다.
- 제10조(위원회의 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11조(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정관」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에 의하여,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관」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에 의하여,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출석통지서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 서면으로 출 석을 통보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가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 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 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발송 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문광고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⑥ 「정관」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

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⑧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 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정관」제62조(제척사유) 및 「정관」제63조(위원의 기피 등)에 의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정계의결) ①「정관」제61조(정계의결의 기한)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정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 ② 「정관」제66조(징계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정관」제67조(징계 의결시의 정상참작 등)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감경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별표 1〉에 의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 ④ 「정관」제66조(징계의결)에 의하여,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알려야하며, 그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정관」제66조(징계의결)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이사장의 징계집행) 「정관」제66조(징계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징계처분사유결정서〈별지서식 제5호〉와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사립학교법」제58조(면직의 사유) 제2항 및 「정관」제45조(직위 해제 및 해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 제16조(이사장의 재심의 청구) ① 이사장은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할청이 제1항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

- 제17조(교원의 소청심사 청구)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 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징계제청서(제6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		(한글)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 기간	~		
	주 소							
	① 금	품 및 향응 수수	- 관계 (□히	당됨, □해당없음)				
비위유형	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 성	③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정계사유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	<u> </u> 일적, 직무수행능 [:]	력, 직무수형	생태도, 주의·경고 횟	I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성적			점, (○○년(
(최근 4년)	(00)	년○○월)	점, (○○년(○○월) 점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됨,	□해당 없음	을)				
징계제청자 의견	*징계의	리 종류와 양을 <i>></i>	기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징계를 제청합니다.							
		6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한라대학교 총장 (인)								
학교법인 1	배달학	원 이사장 귀하						

장계의결 요구서(제7조제1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직 위 (직급)		
		(한자)	생년월일		재직 기간	~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 요구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출 석 통 지 서(제11조제1항 관련)

2.	성 명	(한글) 소 속					
인적 사항	78 18	(한자) 직위(직급)					
	주 소						
출석 (이 유						
출석 '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의 ⁄	사 항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Q) 24	성 명	(한글)	소속					
인적		(한자)	직위(직급)					
사항	주 소							
본인은	본인은 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u>징계의결서</u>(제13조제4항 관련)

징계혐의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인적사항			
의결주문	* 종류, 징계부가금 더	배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을 <i>:</i>	기계.
이 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u>.</u> ,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i	렁 명시.
교원정계		월 일	
	위원전	} (인)
	위	<u>일</u> (인)
	위	월 (인)
	위	월 (인)
	위 숙	실 (인)

〈별지서식 제5호〉(개정2020.11.2.)

징계처분사유결정서(제14조 관련)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주문(主文)							
이 유	별첨 징계의	결서 사본과 같음					
	위.	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	쿠.				
		20 년 월 일					
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인)							
귀하							

<u>징계의결 재심의청구서(제16조 관련)</u>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직 위 (직급)		
		(한자)	생년월일		재직 기간	~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법인 배달학원 이사장 (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1〉(개정 2020.11.2., 종전 별표1 삭제 후 별표2에서 이동)

장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1.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금품 및 향응	금품 및 향응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수수액의	수수액의	수수액의
	4~5배	3~4배	2~3배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공금 횡령.	공금 횡령.	공금 횡령.
	유용액의	유용액의	유용액의	유용액의
	3~5배	2~3배	2배	1배

* 비고

- ①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징계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삭제 2020.11.2.)

〈별표 2〉(삭제 2020.11.2.)